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76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(2023. 7. 27. ~ 2023. 8. 16.): 별도 의견 없음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1. 제안이유

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,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2028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조의2)
 - 존속기한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
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
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 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 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1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 ----- ----- ----- 2028년 12 월 31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해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이지현
연 락 처	2627 - 1403

현행 조례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정 [1995.03.02 조례 제53호]

개정 [1997.05.10 조례 제148호]

개정 [1998.09.26 조례 제188호] (행정기구 설치조례)

개정 [1999.06.26 조례 제222호]

개정 [1999.09.22 조례 제236호] (통·반설치조례)

개정 [2000.12.16 조례 제293호] (행정기구 설치조례)

개정 [2001.05.09 조례 제314호]

개정 [2001.12.24 조례 제344호]

(일부개정) 2006.12.29 조례 제 474호 (행정기구 설치조례)

(일부개정) 2013.09.27 조례 제752호

(전부개정) 2016.05.10 조례 제852호

(일부개정) 2018.12.31 조례 제99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

제2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고보조금
2. 서울특별시의 보조금

3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4.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른 대기금금 상환금

5.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

6.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

2. 국고보조금 반환

3.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

4. 과오납금 반환

5.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) 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서,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수입)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·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출) ①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

에 따른다.

부칙(제53호, 1995.03.0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48호, 1997.05.10)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제188호, 1998.09.26) (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까지 생략

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보험연금계장으로”를 “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터 까지 생략

부칙(제222호, 1999.06.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36호, 1999.09.22)(통·반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②까지 생략

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호중 “한다.”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“단,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.”

④ 생략

부칙(제293호, 2000.12.16)(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.

⑥부터 ⑧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제314호, 2001.05.09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44호, 2001.12.24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74호, 2006.12.29)(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⑰까지 생략

⑱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“노정보험담당주사”를“생활보장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⑲부터 ⑳까지 생략

부칙(제752호, 2013.9.2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52호, 2016.5.1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999호, 2018.12.31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8.3.27.] [법률 제15309호, 2017.12.26., 타법개정]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